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38 발의연월일: 2021. 1. 26.

발 의 자 : 홍성국・강선우・노웅래

민병덕 • 박성준 • 양기대

윤재갑 • 이개호 • 이장섭

임종성 • 전용기 • 한준호

홍익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법」상 상표와 같은 표지를 부정경쟁 목적이 아닌 선의로 먼저 사용한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선의의 선(先)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후(後)사용자가 상표를 등록하는 것과 같이 주지성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선의의 선사용자가 그동안 사용해온 표지에 대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자로 간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규정 해석에 따르면 후사용자의 선의나 악의의 구별 없이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는 악의의 후사용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에 선의의 선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면서 후사용자가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후사용자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행위에 대하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서"를 "제1항제1호에서"로 한다.

- 1.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그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계속하여 사용한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선사용자"라 한다)가 그 표지를 사용한 행위

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8(선사용에 따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는 해당 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타인은 제1항에 따라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 당하는 경우에는----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 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 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 개하는 행위 <신 설>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 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 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것을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그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계속하여 사용한 자(그 지위 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선사용자"라 한다)가 그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신 설>

표지를 사용한 행위	
② 제1항제1호에서	_
	_
	_
	_
	_
	_
	-
	-
제14조의8(선사용에 따른 표지를	<u> </u>
계속 사용할 권리) ① 제13조	<u>,</u>
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는 해당	}
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	1
를 가진다.	
② 제1항의 타인은 제1항에 때	<u>}</u>
라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	=
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더	
	1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